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병준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윤남진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8년 1월 9일

나. 회부일자 : 2018년 1월 11일

3. 제안이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령산 자연휴양림의 운영, 이용요금처리 방법 등의 관리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나. 자연휴양림의 운영, 요금 징수 방법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다. 사용료 감면, 위약금, 환불처리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조령산 자연휴양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약방법, 시설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 따라 자연휴양림 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함.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시설사용료에 관련된 사항만을 규정했던 현행 조례의 제명을 ‘운영 및 관리 조례’로 전부개정하면서 자연휴양림의 명칭 및 위치, 적용범위, 자연휴양림 관리자의 의무 및 책임, 휴관일, 자연휴양림 예약신청 및 성립 등 세부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음.
- 제6조는 매주 월요일을 정기휴관일로 지정하여 직원들의 근무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1조는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연휴양림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제12조는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 병역명문가 가족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경우 정해진 감면율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하여 신설하였고, 제16조는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이용객 준수사항을 정하였음.
- 전국 평균 수준의 시설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4인실과 6인실 사용료를 현행 대비 약 12% 인상하여 연간 약 4천만원 정도의 수입증대가 예상됨.

☆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충북도민은 20% 요금할인 신설)

구 분	시 설 사 용 료 (천원)								
	'18년 (A)			'19년 예상 (B)			증△감 예상액 (C=B-A)		
	계	비수기	성수기	계	비수기	성수기	계	비수기	성수기
사용료	317,277	67,900	249,377	357,673	77,343	280,330	40,396 (12.7%)	9,443	30,953

☆ 연도별 시설사용료 수입 :

(’17년) 335,735천원 → (’18년) 317,277천원(’17 대비 18,458천원, 5.5% 감)

- 기타 조항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18. 12. 21.~’18. 12. 28.)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령산 자연휴양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약방법, 시설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